경영유의사항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: (대구)세림신용협동조합

2. 조치일(검사서 통보일) : 2021. 07. 13.

3. 조치내용

대상	내 용
기관	경영유의사항 1건

4. 조치대상사실

가. 경영유의사항

(1) 대출수수료 수취업무 관리 강화

2019.10.10. 개정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「여신업무방법서」제1편 제4장 제4절 제1관 제3조에 따르면 조합은 대출과 관련하여 공동대출(기업여신) 외에는 신용조사수수료를 비롯한 대출취급수수료를 받을 수 없고①,

2020.1.13. 개정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「여신업무방법서」제1편 제4장 제4절 제1관 제3의2조 및 「여신규정시행세칙」제8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한도거래대출 약정시 최대 0.5% 이내에서 한도거래약정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, 약정금액에 따라 한도거래약정수수료율을 차등*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고②,

* 약정금액(한도거래수수료율)
i) ○천만원 미만(○.○%), ii) ○천만원~○억원 이하(○.○%), iii) ○억원 초과(○.○%)

2020.3.13. 개정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「여신업무방법서」제1편 제5장 제3절 제3조 및「여신규정시행세칙」제8조 등에 따르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2% 범위 내에서 대출 및 차주 유형에 따라 차등 부과(○.○%~○.○%)하여야 하고③,

舊 신용협동조합중앙회「여신업무방법서」제1편 제3장 제6절 제1조 및 제3조 등에 의하면 대출상품 청약을 한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4일

이내에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, 조합은 채무자가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여야 하는데도④,

① 세림신협은 20xx.xx.xx.~20xx.xx.xx. 기간 중 ㈜▽▽▽▽▽▽▽▽▽▽▽▽ 등 □명의 차주에 대해 기업 공동대출이 아닌 개별대출 ○○○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대출취급수수료 ○○○○천원을 수취한 사실이 있고,

② 20xx.xx.xx.~20xx.xx.xx. 기간 중 차주 ◎◎◎ 등 ◇건의 대출에 대해 한도거래약정수수료율 상한(0.5%)을 초과하여 각각 ○.○% 및 ○.○%를 부과함에 따라 한도거래약정수수료 ○○○○천원을 과다 수취하였으며,

20xx.xx.xx.~20xx.xx.xx. 기간 중 차주 △△△ 등 ◇건의 대출에 대해 한도거래약정수수료율을 일률적으로 적용(0.5%)하여 한도거래약정수수료 ○○○○천원*을 과다 수취한 사실이 있고,

* 과다 수취액(○○○○천원) = 실제 수취금액(○○○○○천원) - 내규에 따른 재산정액(○○○○○천원)

③ 20xx.xx.xx.~20xx.xx.xx. 기간 중 차주 ▽▽▽ 등 ◇건의 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대출 및 차주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적용(2.0%)하여 중도상환수수료 ○○○○천원*을 과다 수취한 사실이 있으며,

* 과다 수취액(○○○○천원) = 실제 수취금액(○○○○○천원) - 내규에 따른 재산정액(○○○○○천원)

④ 20xx.xx.xx. ○○백만원 대출약정을 하고 20xx.xx.xx. 전액 상환한 차주 □□□에게 대출계약 철회제도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고 중도상환수수료로 ○○○천원(◇건)을 수취하고도 이를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등,

세림신협은 대출수수료 수취업무 관리가 전반적으로 소홀하므로 내규에 부합하게 대출수수료가 수취될 수 있도록 사전 확인 및 사후 점검 절차를 마련하는 등 업무처리에 대한 관리·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